#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58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강선우 · 임오경 · 김윤덕

서미화・진성준・조승래

김교흥 • 임호선 • 윤호중

전진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 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4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 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	제41조(요양급여) ①
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8. 간병</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
	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일
	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
	<u>한다.</u>
	<u>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u>
	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
	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
	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 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 • 재 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 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 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 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 <u>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u>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 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의 면제에 관한 절차 ·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해당하는 자는-----

제115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⑤ (생략)

\_\_\_\_\_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 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 게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자
- ⑤ (현행과 같음)